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13859
결재일자	2016.5.31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21호

주 무 관	자활고용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부 구 청 장
안호중	한영옥	김은희	김유호	05/31 정연찬
협 조	생활보장팀장 주무관		송순득 김혜연	

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

■ 성과분석 개요

- 근 거 :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
- 분석대상 : 자활기금 운용 성과(2015년 회계연도)
- 분석방법 : 안전행정부 기금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
- 내 용 :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제출

■ 분석결과

- 기금 조성액 : 664백만원(2015년도말 기준)
-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5년 운용현황		'15년말 조성액	'16년 운용계획			비 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
664	0	664	18	30	△12	

복 지 환 경 국
사 회 복 지 과

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- 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」에 의거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
- 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 - 법 제14조에 따른 「성과분석 보고서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

II 기금운용 현황

- ▣ 설치근거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 - 서울특별시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▣ 설치목적
 -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·효과적 수행
- ▣ 설치연도 : 2011년
- ▣ 조성목표액 : 5억원
- ▣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5년도 운용현황		'15년도말 조성액	'16년도 운용계획			비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
664	0	664	18	30	△12	

Ⅲ

분석결과

총 평

- 자활기금은 2011년 설치,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목표액 (5억)초과 달성
- 2011~ 2014년 까지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으며, 2014년 말 현재 당초 조성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위해
- 2015년 택배자활근로사업단의 차량구입 지원 등을 통한 용도로 활용코자 하였으나, 2014년 국시비 매칭 자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금절감 및 사업조기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비 재원으로 택배사업단의 차량구입 지원 함.
- 향후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나, 자활근로사업의 점포임대등의 기금사업의 효과성이 큰 사업을 실시를 위해 2015년 미사용 기금을 적립함.

사업운영의 성과

-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'14년도			'15년도		
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최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10	0	0	50	0	0

-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4년도	○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: 10백만원	-	0%
'15년도	○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: 50백만원	-	0%

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정도	비 고
·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	·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 지원 사업의 탄력적·효과적 수행	·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,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 ·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·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	해당없음	

-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: '해당없음'
-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, 감사 등의 지적사항 : '해당없음'
-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 여부 논의 : '해당없음'
- 기금을 존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: '해당없음'

사업의 유사성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 · 유사 사업현황 : '해당없음'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'의견없음'

☐ **재원조성의 적정성**

- 조성방법 : 자활사업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
- 기금총액(2015. 12월말) : 664백만원
- 연도별 수입 및 지출실적(최근 3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3		'14		'15	
수 입	합 계	445	100%	628	100%	664	100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	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					
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36	30%	445	71%	628	94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5	1%	15	2%	15	2%
	기타수입	304	69%	168	27%	21	4%
지 출	합 계	0	%	0	%	0	%
	비용자성사업비						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	기본경비						
	예탁금						
	예치금						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전입금/합계)

☐ **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 사항**

- 매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
-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·효과적으로 추진

IV

성과분석 심의

- **심의기간** : 2016. 6.9 ~ 6.10
- **심의주체** :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(10명)
 - 위원장 : 부구청장
 - 위 원 : 복지환경국장, 복지정책과장, 사회복지과장
동작구의회 의원 김현상, 최정춘
이상은, 문순희, 김경태, 김예리
- **심의안건** : 2016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
- **심의방법** : 서면심의
- **의결정족수** : 심의위원 과반수 (가·부)로 의결

V

행정사항

- **자활기금 성과분석 결과 제출** : 기획예산과 (2016. 6. 14한)

- 붙임 : 1. 2016년 자활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(안)1부
2. 2016년 제5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자료 1부
3. 심의의결서 1부. 끝.